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4

2022. 11. 25.
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1. 4. 강남구청장(감사담당관)

나. 상정의결

- 제308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11. 25.) **“원안가결”**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국장 : 신연순)

가. 제안이유

◯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부칙 제2조(유효기간)에 의거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2. 12. 31. 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◯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

다. 참고사항

1). 관계법령

(1)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
(2)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2)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)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4) 기　　타 :

(1) 폐지조례안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2. 10. 7. ~ 2022. 10. 27.) 결과, 강남구 옴부즈만 위원들의 폐지조례안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타 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등을 고려한 결과 미반영함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평가 제외대상임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 제외대상임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조성수)

구청장(감사담당관)이 제출한 본 폐지조례안의 제출이유는 조례 부칙 제25조에 규정된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31일로 되어 있기에 이를 근거로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강남구 내 '옴부즈만'이라는 제도 운영을 종료하려는 것임

감사담당관에 따르면, 현행 옴부즈만 제도는 감사담당관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면이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함

- 고충민원의 처리 : 민원조정위원회 및 청원심의회 제도 이용
- 공공사업 관련 감시, 현장점검 등 : 구민감사관 제도 이용

□ 그동안 추진현황

○ 2022.01.07.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

○ 2022.01.14.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

○ 2022.01.24. :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시범 운영 계획 수립

○ 2022.03.04. : 비상임 옴부즈만 위촉(나윤준, 김희철) 동의안 가결(제301회 강남구의회)

○ 2022.03.30. : 옴부즈만 사무실 설치

○ 2022.04.01. : 시선제 임기제(라급) 임용, 비상임 옴부즈만 위촉

○ 2022.05.09. : 대표 옴부즈만 임용(홍철호)

○ 2022.05.27. : 비상임 옴부즈만 해촉(김희철)

○ 2022.05.31. : 시간선택제 임기제(라급) 사직

○ 2022.06.15. : 2022년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 세부추진 계획 수립

○ 2022.06.22. : 비상임 옴부즈만 위촉(김헌우) 동의안 가결(제303회 강남구의회)

○ 2022.09.30. : 강남구 옴부즈만 운영종료 및 조례폐지 계획 수립

○ 2022.10.25. : 강남구 옴부즈만 조례폐지안 조례·규칙심의회 가결

그런데, 강남구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 기간은 1년이 되지 못하고 있기에, 행정적 지원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. <표 1>과 같이 서울특별시 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17개 자치구에 달하며, 강남구가 폐지할 경우 16개 자치구가 될 것임

<표 1>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옴부즈만 관련 조례 제정현황

연번	자치구별	조례명	비고 (제정일)
1	강남구	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22.01.07.
2	강동구	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	2009.11.11.
3	강북구	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	2012.11.02.
4	강서구	서울특별시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21.07.19.
5	관악구	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1.11.03.
6	광진구	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21.10.29.
7	구로구	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0.12.30.
8	금천구	-	-
9	노원구	-	-
10	도봉구	서울특별시 도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9.07.11.
11	동대문구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6.11.03.
12	동작구	서울특별시 동작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20.11.05.
13	마포구	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4.04.24.
14	서대문구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1.04.27.
15	서초구	서울특별시 서초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22.08.22.
16	성동구	-	-
17	성북구	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21.07.15.
18	송파구	-	-
19	양천구	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21.09.16.
20	영등포구	-	-
21	용산구	-	-
22	은평구	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5.08.06.
23	종로구	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20.07.17.
24	중구	-	-
25	중랑구	-	-
26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	2015.10.08.
		서울특별시 안전감사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5.01.02.

□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있는데, 그러한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과 고충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·정책적 경로나 창구가 있어야 하는데,

집행부는 민선8기 출발 시점에서 폐지 조례안을 집행부 자체 조례·규칙심의회를 경유하여 구의회로 제출하였는 바, 구민 권익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구민 권익 보호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임

□ 따라서, 집행부는 구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며, 당초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옴부즈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 현직 옴부즈만의 잔여직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어야 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. 끝.